

제300회 임시회  
2011.05.20(금)

# 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  
교육위원회

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2011.05.20(금)

교육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교육감

나. 제출일자 : 2011년 04월 04일

다. 회부일자 : 2011년 04월 07일

라. 상정일자 : 2011년 05월 16일

(제3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기획관리국장 구명회)

가. 제안이유

- 지역교육청의 단위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, 현장 밀착형 장학 지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고등학교에 대한 컨설팅장학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

- 일반고등학교에 대한 **컨설팅장학** 권한을 **교육장에게** 위임함  
(안 제5조제2호)

## 3.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: 김왕년)

- 본 조례 개정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선진형 지역교육청의 기능 및 조직개편안(2010.5)에 따라 도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반고등학교의 “**컨설팅장학, 수시장학, 통신장학**” 중에서 “**컨설팅장학**”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임.
- **일반고등학교에 대한 컨설팅장학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**하는 것은 학생·학부모·교사 등 현장지원 기능을 강화하고, 초·중·고등학교를 통합 지원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측면에서는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생각됨.
- 다만, 지역교육장은 고등학교에 대한 운영·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지도·감독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권한 이관에 따른 업무량 증가 등에 대한 대책 강구 등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.

○ 지역교육청 관내 고등학교 현황

순	교육청명	학 교 수	순	교육청명	학 교 수
1	청주	29(19)	7	영동	5(2)
2	충주	11(6)	8	진천	4(2)
3	제천	7(4)	9	괴산증평	5(3)
4	청원	9(3)	10	음성	3(2)
5	보은	4(2)	11	단양	3(2)
6	옥천	3(2)	합 계		83(47)

※ ( ) 은 이관대상 학교 수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9. 첨부서류 :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**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**

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관할학교의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·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와 관할구역 내 일반고등학교의 컨설팅장학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관할학교의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·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</u></p> <p>3. ~ 29. (생략)</p>	<p>제5조(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관할학교의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·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와 관할구역 내 일반 고등학교의 컨설팅장학</u></p> <p>3. ~ 29. (현행과 같음)</p>

## 관 계 법 령 발 취

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[법률 제10046호, 2010. 2. 26.]

제26조(사무의 위임·위탁 등) ①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제35조(교육장의 분장 사무) 교육장은 시·도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.

1. 공·사립의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공민학교·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지도·감독
2.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

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[대통령령 제22230호, 2010. 6.29.]

제6조(교육장의 분장사무의 범위) 법 제35조제1호에 따라 교육장이 위임받아 분장하는 각급학교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지도·감독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수학습활동, 진로지도, 강사 확보·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
2. 과학·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
3. 특수교육,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,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
4. 학교체육·보건·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
5. 학생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
6. 학부모의 학교 참여, 연수·상담,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7. 평생교육 등 교육·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·집행, 수업료, 입학금 등 각급 학교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지도·감독 사항